



제329회 임시회

2014.04.11.

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

전문위원 검토보고

○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: 2014년 03월 31일

○ 회부일자: 2014년 04월 02일

3. 제안이유

2014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정책수요 증원분 및 통합 청주시 출범 등에 따른 교육행정기관의 기구변화로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,145명으로 8명 증원(안 제2조)

나.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
(안 제3조)

다. 지방공무원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 조정(안 제4조, 별표3)

1) 4급 상당 이상 교육전문직원 단위기관별 조정: 교육지원청 △1,
직속기관 +1

구 분	정원 변경사항			비고
	개정전	개정후	증감	
정무직공무원	1	1	0	교육감
일반직공무원	2,893	2,901	8	
연구직공무원	12	12	0	연구사
교육전문직원	231	231	0	
총 계	3,137	3,145	8	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정책수요 증원분¹⁾ 8명을 반영하고,
- 통합청주시 출범 등에 따른 교육행정기관의 기구변화²⁾로 단위 기관별·직급별 정원을 개정하였으며,
-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“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 지방 공무원”으로 명확히 하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됨.

1) 병설유치원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보강

2) 청원교육지원청 폐지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3.12.12.] [대통령령 제24889호, 2013.12.4.]

제15조(정원의 관리)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 공무원의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그 조사·확인 결과를 기관별·기구별·종류별·직렬별·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·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
2.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3.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
제20조(정원의 규정) ① 시·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 정원
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
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
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·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및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④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